

친수구역 지정([]변경 []해제)제안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	처리기간	60일
제안자	기관명(법인명)			
	대표자		법인등록번호	
	주소			
	전화번호			
지정 (변경, 해제) 대상지역	친수구역의 명칭			
	사업시행자			
	위치			
	면적			
	변경(해제) 내용			

「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(제4조제4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친수구역의 지정(변경,해제)을 제안합니다.

년 월 일

제안자

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2. 친수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지형도 3. 친수구역에 편입될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 서류 4. 수용하거나 사용할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토지·건축물,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), 주소를 적은 서류 5. 법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서류 6. 친수구역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(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7. 친수구역 해제사유서(해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